

1. 개정이유

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·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이 개정(법률 제19988호, 2024.1.9. 공포, 2024.7.10. 시행)됨에 따라, 운송주선약관에 규정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, 운수종사자의 중복되는 교육 개선 등 규제개선을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 규정
(안 제16조제5항 신설)
- 나.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 한시적
해제 근거 마련(안 제21조제8호)
- 다. 위험물질운전자가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
경우에는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
(안 제53조제3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중개·대리하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화물의 상·하차지 등 중개화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2.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운임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
3. 화물 중개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 등 중개수수료의 부과 기준

제21조제8호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8.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할 것. 다만,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가.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: 상호

나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: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

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: “화물”이라는 표

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(영어, 중국어 및 일본어)로 표시
제53조제3항 단서 중 “교육을 이수한”을 “교육을 이수하였거나 「위험
물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1. 삭 제

2. ~ 7. (생 략)

8.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(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)을 표시할 것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“화물”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(영어, 중국어 및 일본어)로 표시할 것

9. ~ 26. (생 략)

2. ~ 7. (현행과 같음)

8.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다음 각 목에 따라 표시할 것. 다만,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의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가.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: 상호

나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: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

다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: “화물”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(영어, 중국어 및 일본어)로 표시

9. ~ 26.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운수종사자 교육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은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「도로교통법」에 따른 무사고 · 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교육을 실시하는 해에 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<u>교육을 이수한</u>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. ④ · ⑤ (생 략)	제53조(운수종사자 교육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<u>교육을 이수하였거나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</u> --- ---. 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